

구포동 생활체육공원
관리 · 운영 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4. 11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이용자에 쾌적한 환경조성,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활성화 및 공공시설 운영방법을 개선코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위탁재산현황

- 시설명 : 구포동 생활체육공원
- 위치 : 구미시 구포동 1191번지
- 규모 : 부지 28,052㎡, 건축면적 178.83㎡
건축연면적 224.36㎡(지상2층)
- 사업비 : 3,000백만원(국비 900, 도비 630, 시비1,470)
- 주요시설 : 클레이코트 6면, 축구장, 풋살장, 농구장, 관리동 등

3. 운영전출금 : 연 263백만원

○ 운영전출금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공공요금	일반운영비	시설유지비	기타	비고
263	206	24	13	17	3	

4. 관련법령

- 「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구포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

I 사업개요

- ☐ 위 치 : 구미시 구포동 1191번지
- ☐ 사업내용 : 클레이코트6면, 축구장, 풋살장, 농구장, 관리동 등
- ☐ 사업기간 : 2012년 ~ 2015년
- ☐ 사 업 비 : 3,000백만원(국비 900, 도비 630, 시비1,470)

구 분	사업비	2012	2013	2014	2015
계	3,000	1,000		1,000	1,000
국비	900			200	700
도비	630			330	300
시비	1,470	1,000		470	

II 조 감 도



관 련 법 령

◎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◎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◎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

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